



제 419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와 지자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 운영경비 등 지원 등〉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17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이 만 회 의 원 대 표 발 의	1
1. 제 안 경 위	1
2. 제 안 이 유 및 주 요 내 용	1
3. 제 21 대 국 회 심 사 경 과	2
4. 검 토 의 견	3
가. 국가와 지자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 운영경비 등 지원(안 제12조)	3
나. 후계농어업인 단체 대상 국·공유 시설 무상사용 및 조세감면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2
 <참고>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	21

I. 이만회의원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0. 25.

다. 회 부 일 : 2024. 10.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후계농어업인 역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적응하지 힘들.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3.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제21대국회에서도 후계농어업인 단체 운영경비 등 지원, 국·공유 시설 무상사용 및 조세감면에 관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2022.11.8.)」이 발의된 바 있음.

당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2023.9.20.)되었는데, 후계농어업인단체에 국·공유 시설 무상사용 및 조세감면을 인정할 경우,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었고, 이후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2024.5.29.).

4. 검토의견

가. 국가와 지자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 운영경비 등 지원(안 제12조)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개인·법인 및 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출연 및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후계농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말함.

또한 후계농어업인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u>행정적·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 ----- ----- ---- <u>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u> -----. ② <u>개인·법인 및 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u>

2)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 농업인력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유도하는 후계농업인 단체 역할의 중요성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경비 등 지원항목을 구체화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의 지원이 농어촌지역사회 리더 양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임.

③ 후계농어업인 단체(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¹⁾) 의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과 농어업 인력육성 등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농업인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농업 경영 노하우 공유, 정책 제언, 교육 및 교류 활동을 통해 젊은 농업 경영인들의 역량 강화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검토의견

①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등 지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제정·공포되어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현재 이 법을 근거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설립되어 후계농업인의 미래 농어업 생산력 제고와 후계농업인 스스로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

-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 설립 시기 : 1987년 12월
- 조직
 - 중앙회-시도연합회장(17개)-시·군연합회(167개)-읍·면회(1,500개)-회원(약14만명)
- 5대 지표
 -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화합·단결하는 조직 ○ 농정개혁과 농권실현
 - 통일농업시대의 개척 ○ 세계속의 농업경영인
- 역점 사업
 - 회원 및 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 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대선 대응활동
 - 조합장 공명선거 운동 및 지속적인 협동조합 개혁운동
 - 자유무역 협상 진행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활동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2024.12.5. 제출)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

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2조제1항은 이를 ‘운영경비²⁾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대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고, 농업인 교류센터(’25년 5억원), 후계농업경영인문화학술대회 지원(’25년 1억 9,500만원) 등에 대한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단체소개 및 지원현황	2022	2023	2024	2025(안)
농업인교류센터지원	· (단체소개) 전국 후계농업경영인들이 협동하여 조직한 자주적인 단체 · (사업내용) 민원상담(현장·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작·방송 등	500	500	500	500
후계농업경영인문화학술대회지원	· (단체소개) 전국 후계농업경영인들이 협동하여 조직한 자주적인 단체 · (사업내용) 후계농업경영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문화학술대회 등 지원	195	195	195	19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2024.12.5. 제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명시적 근거가

2) 운영비 :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³⁾.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후계농어업 인력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후계농어업인단체는 최근 농촌 인구 감소,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청년 이탈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재정 여력이 부족한 후계농어업인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 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이를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로 규정하고자하였으나, ‘운영경비’를 보조금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3)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경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 연합회의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음(2024.8.13.,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인건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

있어 보임.

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운영비에
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이 포함되므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비용)를 지
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
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유사입법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은 2020년 2월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활동 단체⁴⁾에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단체가 출연·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운영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4에이치활동 단체에 운영비 등이 지원된 바 없고, 교육 운영비 등 일부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2024년 이후 해당 사업 예산의 삭감으로 별도의 정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7억 7,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의견임.

4) <한국4에이치활동본부>

4-H 이념에 입각한 교육 훈련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유능한 민주시민의식을 길러주고, 농심 함양과 자연·환경친화적 활동 및 기술을 연마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세대를 육성·지원하는 청소년 사회교육단체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동 중인 단체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경비등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후계농업인단체 수(A, 개)	17	17	17	17	17	—
후계어업인단체 수(B, 개)	12	12	12	12	12	—
운영경비등 지원단가(C, 백만원/개)	26	26	26	26	26	—
운영경비등 지원금액 (D=(A+B)×C, 백만원)	754	754	754	754	754	3,770
국비(D×50%)	377	377	377	377	377	1,885
지방비(D×50%)	377	377	377	377	377	1,885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②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 마련

개정안 제12조제2항은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기부나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 사업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청소년 기본법」⁵⁾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5)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함.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사용 전반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민간단체나 개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금할 경우 일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사용 내역 공시,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후계농어업인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단법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기부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부금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금·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나. 후계농어업인 단체 대상 국·공유 시설 무상사용 및 조세감면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 제12조의2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12조의3은 정부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정안 제12조제2항 신설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의3(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관계부처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① 국·공유시설 무상사용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이 이루어져야 실익이 발생하므로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고, ② 조세특례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세감면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②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⁶⁾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며, 선언적인 효과만을 갖고 있는 조세지원 조항은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

③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

6)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감면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비영리 민간단체인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기관·단체·주민·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④ 해양수산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국·공유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항만 사용 시설료 감면은 항만의 운영과 직접 관련한 업무·활동에 한정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항만의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국·공유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다른 유사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별법에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혼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⑤ 법제처

법제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개별법상의 감면 규정은 혼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개정안 제12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이는 국유재산 관리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특례 부여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개별법을 통해 특례를 규정할 경우, 국가 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특례가 추가되어 국가 자산의 합리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적 검토나 공익적 판단을 통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나 대부료 등의 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무상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리함.

특정 분야나 목적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별도의 개별법이 존재한다면, 그 개별법 규정이 해당 사안에 있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의 공평성·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

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조세 감면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후계농업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영농상속공제⁷⁾, 영농 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역시 같은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은 각종 법률에서 분산 규정하던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동 법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 사항의 총체적인 재조정·단일화를 통해 과세 공평과 효율적 세수관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 차원으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개별법에서 조세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하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 | | |
|-----------------|------------------------|
| 1. 「소득세법」 | 2. 「법인세법」 |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 「부가가치세법」 |
| 5. 「개별소비세법」 | 6. 「주세법」 |
| 7. 「인지세법」 | 8. 「증권거래세법」 |
| 9. 「국세징수법」 |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하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또한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서만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농촌 지도자 중심의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⁹⁾, 농촌 여성 중심의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¹⁰⁾ 등 다른 농업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참고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은 국·공유시설 무상 사용의 근거를 두되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조

9) (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조직·회원수) 1,858개회, 85,836명

* 설립: 1947년

* 중앙 1, 도·특광역시 17, 시군연합회 194, 읍면동회 1,646

○ (임원) 26명(회장 1, 부회장 5, 이사 17, 감사 3) * 임기 3년(연임 1회)

○ (직원) 20명(사무국 7, 농업인신문 13)

○ (주요기능) 지역농업의 선도인력인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 제고를 통한 농업 신기술 실천·확산 및 경쟁력 향상, 농업 신기술 실천 확산, FTA 대응 경쟁력 강화, 농업인 권익 증진 등

10) (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 (조직·회원수) 1,783개회, 78,032명

* 설립: 1958년

* 중앙 1, 도·특광역시 17, 시군연합회 171, 읍면동회 1,594

○ (임원) 22명(회장 1, 부회장 3, 감사 1, 이사 17) * 임기 2년(연임 1회)

○ (직원) 14명(사무국 3, 농촌여성신문 11)

○ (주요기능) 농촌여성의 잠재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리더 육성, 여성농업인 전문역량강화, 경영·마케팅능력 함양, 도농교류사업, 전통기술 전승, 다문화 가정 멘토링 등

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별표에 국유재산의 특례 및 조세특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음.

그 결과 실질적으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과 조세감면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의3(조세감면 등)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14

□ 운영비 등의 해석

- (지원근거 규정)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21.7.13. 개정)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불가
- (운영비 적용범위)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법안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경비’로 한정
- (법령 범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조례, 규칙 미 해당
- (명시적 근거 해석)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 각 개별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 ①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②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

□ 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적용 기준

①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 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② 운영비 지원 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 (규정형식) ‘~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적용기준) 법령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지원 기능여부 결정